

## 개정 공직선거법 철회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05. 9. 2.

발 의 자 : 운영위원회위원장

### 1. 제안경위

2005.9.2. 제114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유남철 위원외 1인의 동의로 발의된 개정 공직선거법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2. 주문

지난 6. 30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공선법 개정내용중 기초의원회 대한 중선거구제 도입, 정당공천허용 및 의원 정수 20% 축소 등은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 의견수렴 과정을 무시한 채 일방적이고 편견된 정치적 야합에 의한 것으로 즉시 철회할 것을 주장하며 별첨과 같이 결의한다.

### 3. 제안이유

- 지방분권과 지방화시대 특성에 맞는 지방화의 역할이 증대되고,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시점에 기초의원회 대한 중선거구제 도입, 정당공천허용 및 의원정수 20% 축소 등은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축소시키려는 행위로 지방화, 국제화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의 근본정신을 무시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할 수 없음.
- 따라서 주민들의 대표성과 지방자치 및 기초의원회의 본래 취지를 부정하는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도입, 정당공천허용 및 의원정수 20% 축소 등은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정치적 야합에 의한 것이므로 원천 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철회할 것을 촉구 하고자 함.

### 4. 참고사항 : 없음

※ 첨부 : 개정 공직선거법 철회 촉구 결의문

## 개정 공직선거법 철회 촉구 결의(안)

지난 6. 30 국회는 시·군·자치구의회의원에 대한 중선거구제 도입, 정당 공천 허용, 정수 20% 감축, 비례대표제 등을 도입키로 했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선거 관련 법률의 개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활동시한에 쫓겨 이해당사자는 물론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한 채 국민을 속이고 정치적 야합에 의해 일방적으로 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했다.

이는 절차상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온 국민의 이름으로 원천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며 마포구의회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현재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1. 시·군·자치구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시·군·자치구의회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 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을 속이고 입법권을 남용한 국회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고 이를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결의한다.

2005. 9.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의원일동